

제2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2. 3.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환경부훈령 제1104호, 2014.7.18)으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분리배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촉진하며, 상위법에 의한 포괄적 개념의 제명 사용 및 순화용어 사용, 오탈자 및 중복된 내용의 정비를 통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순화용어 및 오탈자 정비(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22조~제24조)

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령 및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0조 별표 1, 안 제20조 별표 4)

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처리수수료 별표 6 삭제하고 본 조항에 삽입(안 제20조)

마.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안 제11조, 안 제2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104호, 2014.07.1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4. 10. 24. ~ 2014. 11. 13.)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비규제(기획감사실-12412)
- 4)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붙임
- 5)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검토의견서 붙임)
- 6)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우수지역는”을 “우수지역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본문 중 “가로”를 “가로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같다”를 “같고, 수수료는 납부필증 또는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가구당 1,140원/년을 마을단위로 공동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을 “(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태료부과)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28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 등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10조제1항제4호 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등은 별도로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흘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	○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휴대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 종 이 류 (고지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편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 고 철 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다. 의 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기타 의류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아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라.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마. 소형 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 드라이 등 「쓰레기수거료 증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4.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요령

구분	종류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분리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류 등에 담아 배출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박스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자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 종이류,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전용용기에 배출
- ※ 유리병은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와 같은 통합전용용기에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전용봉투에 배출
-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여 단독주택지역에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4]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
가 방	모든 규격	1,000
간 판	3m 이상	8,000
	3m 미만	4,000
금 고	대 형	15,000
	소 형	12,000
목 재 류	kg당	1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문 짝	0.9m * 1.8m 이상	4,000
	0.9m * 1.8m 미만	2,000
물 탱 크	5m ³ 이상	10,000
	5m ³ 이하	6,000
밥 상	모든 규격	2,000
벽 시 계	모든 규격	2,000
변 기 통	모든 규격	3,000
보 일 러 통	대 형	8,000
	중 형	5,000
	소 형	3,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쌀 통	모든 규격	3,000
서 략 장	5단 이상	6,000
	3단 이상	4,000
	3단 미만	2,000
세 면 대	모든 규격	2,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소 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8,000 5,000
수 족 관	대 형 소 형	10,000 5,000
스 피 커	모든 규격	2,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신 발 장	모든 규격	3,000
싱 크 대	조리대(개당) 식기대(개당) 싱크대, 조리대	2,000 2,000 4,000
액 자	모든 규격	2,000
오 락 기	대 형 소 형	6,000 4,000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욕 조	모든 규격	4,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인 형 류	모든 규격	2,000
의 자	대 형 중 형 소 형	3,000 2,000 1,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
장 난 감 류	모든 규격	2,000
장 농	120cm 장 1쪽 90cm 장 1쪽	15,000 10,000
장 식 장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7,000 4,000
장 판	kg당	100
진 열 대	대 형 소 형	5,000 3,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찬 장	높이 90cm 이상	8,000
	높이 90cm 미만	5,000
책 상	양수, 편형	5,000
	편수, 소형	4,000
책 꽃 이	모든 규격	2,000
침 대 류	목재류(개당)	2,000
	매트리스(2인용)	5,000
	매트리스(1인용)	3,000
카 펫	kg당	100
칸 막 이 판 널	개당	2,000
캐 비 넷	높이 1m 이상	7,000
	높이 1m 미만	4,000
플 라 스 틱 류	kg당	100
피 아 노	그 랜 드	15,000
	어프라이드	10,000
항 아 리	100ℓ 이상	4,000
	100ℓ 미만	2,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5,000

※ 상기의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현행	개정안
<p>제25조(과태료부과)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중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임실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의한다.</p>	<p>제25조(과태료부과)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제28조(포상금 지급)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8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 등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임실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 미첨부 사유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4. 작성자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최병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전북임실056		
정책명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환경보호과	
	담당자명	전희주	전화번호 063-640-239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10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보호과)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11월 06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생활복지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정나겸/640-2124)</p> <p>환경보호과장 귀하</p>			

관련(상위)법령 발췌문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환경부 훈령 제1104호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요령에 기준하여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시 대상인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7.18.]